

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

제 1 절 총 칙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57조에 의거하여 각 선거별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 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제 1 장 선거권, 피선거권

제 1 조 (선거권) ①총·부학생회장의 선거권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있다.

②단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권은 위①의 해당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에게 있다.

제 2 조 (피선거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차기 학부(과) 학생회장은 총·부학생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②단대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총·부학생회장 입후보자, 차기 학부(과)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③선거시행 당해 단대 학생회 임원이 입후보할 때에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구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는 당해년도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중앙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해년도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기타 중앙선관위 위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는 위원장 권한으로 대의원 중에서 대학별 각 1명 씩을 선출하여 할 수 있다.

④중앙선관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⑤중앙선관위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의 임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총·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 5 조 (기능) ①중앙선관위는 총·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관위는 당해 총·부학생회장 선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 6 조 (개회 및 의결) 중앙선거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 규정 중 제33조, 제35조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제 7 조 (구성) ①단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대선거위”라 한다)는 당해년도 단대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은 중앙선거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단대선거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해년도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③단대선거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8 조 (위원장의 임무) 단대선거위 위원장은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제 9 조 (기능) ①단대선거위는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단대선거위는 당해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 10 조 (개회 및 의결) 단대 선거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련된 규정 중 제33조, 제35조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선거일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제 11 조 (선거일 공고) ①중앙선거위와 단대선거위는 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일정을 투표일 30일 이전에 확정 공고한다.

②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투표는 매년 11월중 동시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의 경우 당해년도 3월중에 실시한다.

제 12 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중앙선거위 및 단대선거위는 해당 선거인명부를 투표일 2일전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학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투표자 및 선관위 확인을 표기한다.

제 5 장 선거비용

제 13 조 (비용부담) 본 절의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 14 조 (비용책정) ①본 절의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책정은 중앙선거위에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후 책정한다.

②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비용은 각 단대 회원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비용책정후 입후보자의 증감에 따라 중앙선거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비용집행) 총·부학생회장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선관위가, 단대학생회장 및 부회장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단대선관위가 각각 집행한다.

제 6 장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제 16 조 (등록) 총·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입후보자 등록기간동안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원(소정양식) 1부
2. 재학증명서 각 1부
3.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4. 각서(소정양식) 1부
5. 본 회 회원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6. 선거공약 및 상징문 1부.
7. 입후보자 소견문 1부(한 조에 1부, A4용지 2장 내외)
8. 명함판 사진 각 1매
9. 참관인 명단(총·부학생회장은 8명, 단과대학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2명) 1부

제 17 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①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3.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6.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②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단, 재선거 시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제한)
2.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3. 당해 대학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6.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제 18 조 (입후보자 등록방법) 총·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2인 1조가 되어 출마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 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투표일 15일전까지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투표권자) ①총·부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인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각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투표인은 위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인 자로 한다.

제 21 조 (선거운동) 중앙선거위와 단대선거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1.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해당 선거위에서 정한다.
2. 각 선거위는 입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여부 및 일시, 장소는 선거일정에 포함하여 공고한다(총·부학생회장 입후보자 소견발표회는 2회,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발표회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3.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내용, 규격, 부수 및 게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선거위가 정한다.
4. 각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금품제공, 폭행 및 협박, 유언비어 유포, 불순한 언동, 타 후보의 비방, 학생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선거위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교외에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6. 각 선거위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집단적인 소견발표 행위를 할 수 없다.
7. 등록된 후보자는 중앙선거위 주재 하에 선거관련 제반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 7 장 투·개표 및 당선인의 결정

제 22 조 (투표방법) 투표방법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여 소정의 투표용지에 이를 기표한다.

제 23 조 (선거유효) 본 절의 선거는 투표자 2/5이상 참가시 유효하다

제 24 조 (투표시간) 본 절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7시까지로 하고 2일이내로 한다. 단,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표일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투표장소) 각 선거위는 학내 승인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투표장소에 상주할 수 없다.

제 26 조 (참관인) 투·개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투표장, 개표장, 투표함 이송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제 27 조 (투표시 지참물) ①투표시 투표권자는 학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및 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장 입장시에 선거인명부와 대조 날인한다. 단, 인장의 미지참 시에는 서명으로 대체한다.

②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투표권자는 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투표를 할 수 없다.

제 28 조 (개표) 개표는 해당 선거위원이 각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지정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봉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집계한다.

제 29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당해 선거위에서 제작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당해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0표하지 않은 것
4. 어느 기표란에 0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2개 이상의 기표란에 0한 것
6. 0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식을 한 것
7. 한 기표란에 중첩된 0표와 당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표 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

제 30 조 (당선인 결정 및 당선인 임기) ①당해 선관위는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당선 확정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②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③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에 의해 당선여부가 결정된다.

④총·부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각급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재선거) 다음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재선거에서 후보로 등록 할 수 없다.

1. 해당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
3.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4.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하는 경우

제 32 조 (보궐선거) 다음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기만료 150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이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1. 학생총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2.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3. 기타 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보궐선거로 뽑힌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 33 조 (이의신청) ①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개표가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을 할 경우 후보자는 이의서 및 관계자료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 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이의 내용을 심의·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거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선거심판위원회는 제소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심판위원회는 당해 학생지도위원회로 한다.

제 34 조 (당선공고) 당해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별 칙

제 35 조 (입후보자 등록 및 당선취소) 당해 선관위는 다음의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본 절 제16조 1, 4, 5호의 서류작성을 허위로 한 자
2. 본 절 제21조 3, 4, 5, 6호를 위반한 자
3. 기타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

제 36 조 (처벌) 이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가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37 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선관위가 이를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 3 절 대의원 선임 시행세칙

제 11 장 대의원회

제 38 조 (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부(과), 학년별로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9 조 (자격) 대의원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재학 중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은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집행부 임원, 단대 학생회 임원 및 학부(과) 학생회장은 겸임할 수 없다.

제 40 조 (선거) 대의원은 각 학부(과)의 학년별 재학생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복수의 추천이면 해당 학년별 재학생의 무기명 투표로 최고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41 조 (선거시기) 임기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1학년 대의원은 당해년도 3월중에 실시한다.

제 42 조 (등록) 선출된 대의원은 당해년도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등록한다.

제 43 조 (자격취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학생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 44 조 (재선)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재선한다.

제 45 조 (보선)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개시 후 대의원을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는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의장이 사퇴 또는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의장·부의장 궐위시는 상임위원 중 호선하여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12 장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제 46 조 (구성) ①대의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며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상임위원회는 각 대학별 재적대의원수의 비례제로 구성한다.

제 47 조 (선임관리위원회) ①대의원회 상임위원 선임관리위원회는 당해년도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 48 조 (자격) ①의장 및 부의장은 4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은 2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

제 49 조 (선거) ①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상임위원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50 조 (선출방법) ①대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을 재투표에 붙인다.

②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1차에서 2차까지의 득표누계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정한다.

③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 13 장 보 칙

제 51 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